

# 2024년 국공립 아라 예미지 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

2024년 3월 4일 개원 예정인 국공립 아라예미지어린이집의 신입원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입소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국공립 아라 예미지 어린이집 원장



##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보육정원(명) | 개원(예정)일          |
|----------------|--|---------|------------------|
| 국공립 아라예미지 어린이집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검단 신도시 예미지 더 시그너스 1층 관리동) | 69명     | 2024. 03. 04.(월) |

## 2. 반구성 및 모집인원

| 연번 | 반구분    | 보육대상 아동               | 반수(개) | 모집인원(명) |
|----|--------|-----------------------|-------|---------|
|    | 계      |                       | 10    | 69      |
| 1  | 만0세반   | 2023.1.1 이후 출생        | 3     | 9       |
| 2  | 만1세반   | 2022.1.1~2022.12.31   | 2     | 10      |
| 3  | 만2세반   | 2021.1.1~2021.12.31   | 2     | 14      |
| 4  | 만3세반   | 2020.1.1~2020.12.31   | 1     | 15      |
| 5  | 만4.5세반 | 2018.1.1.~2019.12.31. | 1     | 18      |
| 6  | 장애반    | 2020.1.1.~2018.12.31. | 1     | 3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정원의 70%까지는 해당 공동주택(예미지 더 시그너스 아파트만 해당) 단지 내 거주자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30%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 영유아의 입소대기 상황에 따라 반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 되어 운영할 수 있음

\* 단, “거주자 자녀” 입소대기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일반배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입소우선권을 가진 “거주자 자녀” 중 입소 가확정지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증임을 증빙하는 자료(주민등록등본)를 개원 전 최종 증빙서류 제출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3. 어린이집별 입소대기 신청 및 확정절차

#### 3-1. 입소대기 신청 및 확정절차

|                       |  |
|-----------------------|--|
| 구분                    | · 국공립아래에미지어린이집   |
| 입소 대기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간 : 2024. 1. 24 (수) 오전 10:00 ~</li> <li>○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a href="http://www.childcare.go.kr">www.childcare.go.kr</a>)에서 영유아 부모가 직접 입소대기 신청(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li> <li>* 입소우선권 : “무상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에 체크 필수</li> </ul>   |
| 입소 확정 (가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 가확정일 : 2024. 2. 2.(금) 18:00 출력물 기준<br/>2024. 2. 5.(월) 10:00 이후 입소 가확정 순차적 개별통보</li> <li>○ 입소대기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가확정) : 개별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선순위 및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li> <li>2. 동일점수에서는 입소 대기신청 순서에 따름</li> <li>3. 2순위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이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음</li> <li>4.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li> </ol> </li> <li>○ 입소확정 이후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확정 원아보다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대기자로 관리</li> </ul> |
| 입소 확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 (1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서류 제출(1차) : 어린이집에서 해당하는 가정으로 개별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공동주택 우선입소 확인용)</li> <li>② 입소순위 증빙서류</li> <li>③ 기타 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li> </ul> </li> <li>· 공동주택 우선입소 신청자로서 1차 서류 제출일 기준 해당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세대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제출(2차 최종서류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li> <li>* 어린이집 출석일수 부족 시 자부담 발생(보육료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li> <li>○ 서류제출 및 문의처 : 뒷면(6. 관련문의 및 증빙서류 제출) 참조</li> </ul>  |
| 증빙서류 제출 (2차 최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별도 안내</li> <li>○ 입소 우선순위 증빙서류 제출(최종) 및 입소완료(최종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일 1주일 전 입소 우선순위 자격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재확인 (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입소일 1주일 이내가 유효함)</li> </ul> </li> </ul>  |
| 입소                    | ○ 2024. 3. 4.(월)   |

## 3-2. 입소신청자 유의사항

---

### ● 입소대기 신청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에서 입소대기 신청
    - \* 입소대기 신청 전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에 사전 방문 입소대기 시스템 사용절차 확인
    - \* 입소대기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준비(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등)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 ※ **입소대기 시스템 입력 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의 경우 “입소대기 아동 선택”에서 “무상임대 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 거주중인 영유아”에 체크 필수(거주자 70% 입소우선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임)**
  - ※ **입소일은 개원일 이후로 체크 -> ‘2024년 3월 4일’로 체크 (‘1월’, ‘2월’은 아님)**
  - 입소대기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2곳,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3곳까지 신청 가능하며, 어린이집 입소처리 후 타 대기신청 건은 7일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됨에 유의
  - **입소자 확정은 입소대기 신청아동을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입소 확정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우선순위 및 입소점수에 따라 순위변동이 가능함.**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입소우선 순위 점수)에 따라 입소확정이 진행되니 착오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신청
    - \*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임의로 보류 조치하고 그 다음 차 순위자 입소 확정 가능.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3회 이상)을 통해 확인
  -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입소확정 후에 관련 증빙서류 확인 결과 당초 신청사항과 상이할 경우 입소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우선순위는 증빙서류 확인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입소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됨
  - 시스템 개방 시간은 전산사정에 의해 지연되거나, 입소대기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그 밖에 입소대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

#### 4. 모집원아 입소 순위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적용

| 순위  | 점수            | 구 분   |
|-----|---------------|---|
| 1순위 | 200점<br>(항목당) | ○ <b>맞벌이 가구</b>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br>- 취업의 정의 : 월 60시간 이상 근로<br>-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포함<br>-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되지 않음  |
|     |               | ○ <b>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b>  |
|     | 100점<br>(항목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자(장애부모)의 자녀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br>-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br>*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br>*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br>* 자동연계 불가시 직접증빙서류 제출[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     |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br>*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br>*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     |               |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     |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
|     |               | ○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 2순위 | 50점<br>(항목당)  |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
|     |               |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br>※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     |               |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br>※ 단, 재원 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br><br>※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가확정일 기준 재원생이 없으므로 점수를 신청할 수 없음   |
| 3순위 | 0점            | ○ 1, 2순위 이외의 자  |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3자녀 + 맞벌이 가구 : 200점 + 200점 + 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 “♣” 표시된 항목은 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므로 증빙자료 제출필요 없음

- ※ 입소순위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 대상에게 부여된 배점 및 신청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짐 (**\*입소순위는 입소확정 전까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음**)
- ※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 70%까지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30%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 5. 증빙서류

| 구분           | 적용 원칙 및 서류 확인   |
|--------------|---|
| 거주자<br>입소우선권 | ○ 주민등록 등본(1차 서류제출 시에는 전·월세계약서, 분양계약서 제출 가능)   |
| 맞벌이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li> <li>-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li> <li>-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li> <li>-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li> <li>-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취업준비자</li> </ul> </li> <li>○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필수)와</li> <li>②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소득세납세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서류 중 1부(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li> </ul> </li> </ul> </li> <li>-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li> </ul> </li> <li>-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1부(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li> </ul> </li> <li>- 취업준비자 : ①,② 중 1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업훈련과정참여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필수)</li> <li>②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단 출석수업에 한함</li> <li>*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 후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li> <li>* 구직활동 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li> </ul> </li> </ul> </li> <li>- 자영업 : (공통)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서류(필수)<br/>(일반)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br/>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br/>사업장의 매출장부*(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li> </ul> </li> </ul> </li> </ul> |

|  |   |              |
|--|---|--------------|
|  | <p>*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br/>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p> <p>※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br/> 기타 농·어업인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필수),<br/>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증명가능 서류 중 1부(필수)</p> <p>○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를<br/> 요구할 수 있음</p> |              |
| 다자녀가구  | <p>○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br/>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p> <p>○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br/>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p>   | 중 1부<br>(필수) |
| 임신부  |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 (필수)<br>(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              |
| 국가유공자자녀  | ○ 국가유공자 확인서(필수)   |              |
| 제1형<br>당뇨아동                                      |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각 1부(필수)   |              |
| 북한<br>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필수)   |              |
| 「다문화가족<br>지원법」<br>제2조제1호에<br>따른<br>다문화가족의<br>영유아 | <p>○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p> <p>○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p> <p>※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br/>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제출<br/>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p> <p>※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br/>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 중 1부<br>(필수) |
| 기타 한부모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
| 조손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필수)   |              |
| 입양된 영유아  | ○ 입양확인서(필수)   |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필수)   |              |
| 동일 어린이집<br>재원중인 형제·자매                            | <p>○ 형제·자매 재원확인</p> <p>※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시 첫째 자녀가<br/>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p>   |              |

## 6. 관련문의 및 증빙서류 제출

### ○ 입소대기 시스템 문의

※ 입소대기 신청방법 등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의  
입소대기신청안내 참고 및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단축번호 1번)**로 문의

○ 어린이집 관련 문의 및 증빙서류 제출장소

|                  |                 |  |
|------------------|-----------------|--|
| 어린이집명            | 연락처             | 증빙서류 제출 장소<br>(가확정 순위내에서 개별 연락드립니다)          |
| 국공립<br>아라에미지어린이집 | T. 032-710-7474 | 국공립아라에미지어린이집<br>(10시~18시<br>중 12시~13시 점심시간 ) |

서류 제출일 (가확정 대상자)

인터넷 순위 기준으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으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접수일                         | 접수 대상자  |
|-----------------------------|---|
| 2024년 02월 13일 (화) (10시~18시) | 만0세 (23년 이후 출생)<br>~만2세(21년생)                 |
| 2024년 02월 14일 (수) (10시~18시) | 만3세(20년생) ~<br>만4.5세 (18.19년생),<br>장애반(20년생~) |

\* 1차 서류 확인 후 탈락자로 인하여 입소대기자 인원이 발생한 경우,  
그 인원 수 만큼 후순위 대기자를 순서대로 연락하여 입소 확정을 합니다.

\* 서류 맨 위에 입소할 영유아의 만 나이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